

울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122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나1222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가단54950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빈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필

변론 종결2020. 11. 12.

판결 선고2021. 1. 14.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가단5495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2017. 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형철

판사안복열

판사김현진

별지